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내대학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·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규정하고, 사내대학·사내대학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의 종업원까지 확대함(안 제32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